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46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남궁역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창진, 이성배,
이영실,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 · 훈,
홍국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 또는 공사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규정하고자 함.
- 법령에 따라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관련한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반영함(안 제22조제1항)
- 나. 허가받지 않은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4)
-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단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

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금지 행위 적용대상)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u>법 제49조제2항</u>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22조(금지 행위 적용대상) ① ----- ----- ----- <u>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4(금지 행위 관리·감독) 시장은 <u>법 제24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단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u></p>
<p>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이 <u>법 제56조제1항</u>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p> <p><u><신 설></u></p>	<p>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 <u>법 제56조</u>----- ----- -----.</p> <p>② <u>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u></p>

② ~ ④ (생략)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22조 (금지행위 적용대상)	×	[재정소요 요인 없음]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22조4 (금지행위 관리·감독)	×	[재정소요 요인 없음]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제23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	[기술적 추계 곤란] 2분의1 범위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에 문의결과 과태료 가산 또는 감경 대상, 가산 또는 감면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에 문의결과 과태료 가산 또는 감경 대상, 가산 또는 감면 비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2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